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동문회 규약 (안)

제 1 장 총 칙

- 제 1조 (명칭) 본 회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동문회라 칭한다.
- 제 2조 (정의)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통합학부"라 함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전기전자제어공학과군, 전기공학부, 전기컴퓨터공학부, 전기정보공학부 및 그후신을 말한다.
 - 2. "전기공학과 동문회원"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기공학과 졸업생, 공업교육학과 전기전공 졸업생 및 1946 년 이전의 전기공학과 졸업자로서 강전을 전공한 자를 말한다.
 - 3. "전자공학과 동문회원"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자공학과 졸업생, 공업교육학과 전자전공 졸업생 및 1946 년 이전의 전기공학과 졸업자로서 약전을 전공한 자를 말한다.
 - 4. "제어계측공학과 동문회원"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 졸업생을 말한다.
 - 5. "전신학과들"이라 함은 통합학부의 전신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기공학과, 전자공학과, 제어계측공학과, 공업교육학과 전기전공, 및 공업교육학과 전자전공을 말한다.
 - 6. "정회원"이라 함은 각 목 중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통합학부 졸업생
 - 나. 전신학과들 졸업생으로서 본회에 가입신청을 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
 - 다. 본 회 및 각 전신학과 동문회가 통합하기로 본 회 및 각 전신학과 동문회가 결의한 경우, 해당 전신학과의 졸업생
 - 7. "준회원" 이라 함은 각 목 중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통합학부 대학원 수료자

- 나. 본 회 및 각 전신학과 동문회가 통합하기로 본 회 및 각 전신학과 동문회가 결의한 경우, 해당 전신학과전신학과들 대학원 수료자
- 8. "명예회원" 이라 함은 다음 각 목 중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통합학부 및 전신학과들의 교직원 및 교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
 - 나. 통합학부 또는 전신학과들과 관련이 깊은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
 - 다. 통합학부, 전신학과, 또는 전자전기정보장학재단에 공로가 지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장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
 - 라. 전신학과 동문회의 명예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
- 9. "학생회원"이라 함은 통합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생을 말한다.
- 제 3 조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 본 회는 필요에 따라 분회를 둘 수가 있다.

제 2 장 목적 및 사업

- 제 4 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상호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5 조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기 사업을 추진한다.
 - 1. 간담회, 연구발표, 장학
 - 2. 회원 상호간의 경조
 - 3. 회지 및 회원명부 발간
 - 4. 통합학부 및 재학생과의 협조
 - 5.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3 장 임 원

제 6 조 본 회는 하기의 임원을 두되, 이사 중 전신학과들의 동문회 임원진 약간 명을 당연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회장 1명. 부회장 약간명. 감사 1 또는 2명. 이사

- 제 7조 이사는 간사 이사 및 약간 명의 기타 이사로 구성한다.
- 제 8 조 회장, 감사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간사 이사는 각 졸업년도별로 1~2 명씩 선출한다.

- 제 9조 회장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경우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.
- 제 10 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에 그 임무를 대행 한다. 부회장이 수명인 경우, 부회장의 대행 순위는 회장이 지정하고 회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제 11 조 회장은 부회장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.
- 제 12 조 감사는 매년 1 회이상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 및 발언할 수 있다.

제 4 장 회 의

- 제 13 조 본 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1 회 상반기 중에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여 하기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
 - 2. 본 회의 주요 사업계획
 - 3. 규약의 개정
- 제 14 조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본 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필요사항을 심의한다.
- 제 15 조 총회, 및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.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하며 간사 이사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는 그 기의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다.

제 5 장 재 정

제 16 조 본 회의 정회원은 매년 일정한 액수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 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.

제 17 조 본 회의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독지가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. 제 18 조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 월1 일부터 12 월말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제 1 조 본 규약은 2024 년 _월 _일부터 시행한다. 제 2 조 본 회는 잠정적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내에 둔다.